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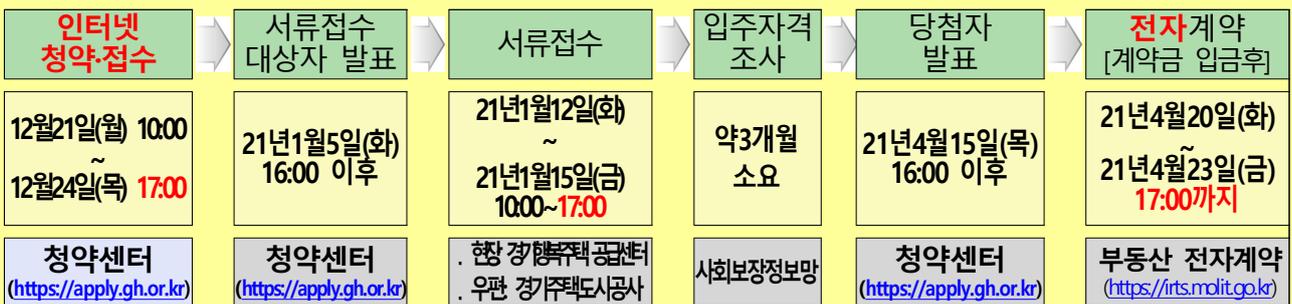
다산지금A5,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2.3.]

- 다산지금A5,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주자격(요약안내)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만19세~만39세가 아닌 사람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우선순위	벤처기업 핵심인재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인력
	자유 창업인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인(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전용사무공간(단지 내 상가 공유오피스 내 설치예정)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전용상가 창업인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인(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단지 내 상가(1개호)에 대해 임대차계약하고 이를 사업장으로 사업 개시 필요
	온라인 창업인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인(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공용사무공간(단지 내 상가 공유오피스 내 설치예정)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청약절차 및 일정 ※ 자세한 사항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참조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별도공지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 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은 인터넷청약(<https://apply.gh.or.kr>)으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전자계약 마감시간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처 :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전화:031-216-7840)]

※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최초 모집 공고일(2020.12.03.)」입니다.

1.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구분	건설위치	총세대수	건물층수	입주(예정)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5블록	2,078호	지하2층~29층	'22년 4월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광주시 역동 169-11	500호	지하2층~26층	'21년 11월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하남시 덕풍동 828번지	131호	지하2층~17층	'22년 2월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최대 거주기간(년)	난방식						
	주택구분	청약구분		합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다산지금 A5	18A	18A1	고령자	24	22	2	18.9415	9.9229	1.9003	9.5327	40.2974	20년	지역방					
		18A2	주거급여수급자	24	0	24												
	18A 18B	18A3	청년		196	97	99	18.9415	9.9229	1.9003	9.5327	40.2974		6년				
								18.9428	9.9236	1.9004	9.5333	40.3001						
	26A 26B	26A5	고령자		6	5	1	26.9625	14.1249	2.7051	13.5694	57.3619		20년				
								26.7959	14.0376	2.6884	13.4855	57.0074						
	26A 26B	26A6	주거급여수급자		96	0	96	26.9625	14.1249	2.7051	13.5694	57.3619		20년				
								26.7959	14.0376	2.6884	13.4855	57.0074						
	26A 26B	26A1	(벤처기업 핵심인재 우선공급)		23	17	6	26.9625	14.1249	2.7051	13.5694	57.3619		6년				
								26B 26A	26B2	청년	4	1			3	26.7959	14.0376	2.6884
	26A 26A	26A2	(자유창업인 우선공급)	12	10	2	26.9625									14.1249	2.7051	13.5694
							26A 26A	26A3	(전문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3	1	2			26.9625	14.1249	2.7051	13.5694
	26A 26A	26A4	(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12	10	2								26.9625	14.1249	2.7051	13.5694	57.3619
							36A 36B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85	180		505	36.9923	19.3793	3.7114	18.6171
36.9618	19.3632	3.7084	18.6018	78.6352														
36A	36A1	고령자		91	82	9	36.9923	19.3793	3.7114	18.6171	78.7001	20년						
							36A2	주거급여수급자	56	0	56		36.9923	19.3793	3.7114	18.6171	78.7001	
44A 44B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50	197	553	44.9539	23.5501	4.5102	22.6240	95.6382	6~10년						
							44.9484	23.5472	4.5097	22.6212	95.6265							
44A 44A	44A1	고령자		84	75	9	44.9539	23.5501	4.5102	22.6240	95.6382							
							44.9484	23.5472	4.5097	22.6212	95.6265							
경기 광주역	22A 22B	22A	주거급여수급자	60	42	18	22.8301	11.6791	3.8600	16.5500	54.9192	20년						
							22.8301	11.6791	3.8600	16.5500	54.9192							
	36 44A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00	137	63	36.9369	17.8208	6.2500	26.7800	87.7877	6~10년					
								44.6973	21.5347	7.5600	32.4000	106.1920						
	44B	44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8	26	12	44.4775	21.6277	7.5200	32.2400	105.8652						
하남덕풍	18A	18A1	대학생	10	5	5	18.9415	12.2710	5.3439	11.2926	47.8490	6년						
													18A2	고령자	3	2	1	20년
	26A 26B	26A	청년		10	5	5	26.9625	17.4673	7.6071	16.0745	68.1114	6년					
								26.7959	17.3593	7.5600	15.9752	67.6904						
	26A 26A	26A1	고령자		6	5	1	26.9625	17.4673	7.6071	16.0745	68.1114	20년					
								26.9625	17.4673	7.6071	16.0745	68.1114						
	36A 36B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3	15	38	36.9923	23.9649	10.4368	22.0541	93.4481	6~10년					
								36.9618	23.9452	10.4283	22.0360	93.3713						
	36B	36B	고령자		2	1	1	36.9618	23.9452	10.4283	22.0360	93.3713	20년					
	44A 44B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2	10	22	44.9539	29.1227	12.6832	26.8007	113.5605	6~10년					
44.9484								29.1192	12.6816	26.7974	113.5466							
44B	44B	고령자		2	1	1	44.9484	29.1192	12.6816	26.7974	113.5466	20년						

※ 청약시스템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주택 구분	청약 구분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다산지금 A5	18A	18A1	고령자	28,500	2,850	25,650	111,000	(+)	42,500	41,000	
								(-)	14,500	140,160	
		18A2	주거급여수급자	22,500	2,250	20,250	88,000	(+)	33,500	33,000	
								(-)	11,500	110,910	
	18A	18A3	청년	소득 有	27,000	2,700	24,300	105,000	(+)	40,000	40,000
								(-)	14,000	132,080	
	18B		소득 無	25,500	2,550	22,950	100,000	(+)	37,500	40,000	
								(-)	13,500	125,000	
	26A	26A5	고령자	39,900	3,990	35,910	156,000	(+)	58,900	61,000	
								(-)	20,900	195,580	
	26B	26B	고령자	39,520	3,952	35,568	155,000	(+)	58,520	60,000	
								(-)	20,520	194,580	
	26A	26A6	주거급여수급자	31,500	3,150	28,350	123,000	(+)	46,500	48,000	
								(-)	16,500	154,250	
	26B	26B1	주거급여수급자	31,200	3,120	28,080	122,000	(+)	46,200	47,000	
								(-)	16,200	153,250	
	26A	26A1	청년 (벤처기업 핵심인재)	소득 有	37,800	3,780	34,020	148,000	(+)	55,800	58,000
					소득 無	35,700	3,570	32,130	140,000	(-)	19,800
									(+)	52,700	55,000
									(-)	18,700	175,410
	26B	26B2	청년	소득 有	37,440	3,744	33,696	146,000	(+)	55,440	56,000
					소득 無	35,360	3,536	31,824	138,000	(-)	19,440
									(+)	52,360	53,000
									(-)	18,360	173,410
	26A	26A2	청년 (자유창업 인)	소득 有	37,800	3,780	34,020	148,000	(+)	55,800	58,000
					소득 無	35,700	3,570	32,130	140,000	(-)	19,800
									(+)	52,700	55,000
									(-)	18,700	175,410
26A	26A3	청년 (전용상가 창업인)	소득 有	37,800	3,780	34,020	148,000	(+)	55,800	58,000	
				소득 無	35,700	3,570	32,130	140,000	(-)	19,800	185,500
								(+)	52,700	55,000	
								(-)	18,700	175,410	
26A	26A4	청년 (온라인 창업인)	소득 有	37,800	3,780	34,020	148,000	(+)	55,800	58,000	
				소득 無	35,700	3,570	32,130	140,000	(-)	19,800	185,500
								(+)	52,700	55,000	
								(-)	18,700	175,410	
36A 36B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6,400	5,640	50,760	221,000	(+)	84,400	81,000		
								(-)	28,400	279,330	
36A	36A1	고령자	53,580	5,358	48,222	210,000	(+)	79,580	80,000		
								(-)	27,580	264,160	
	36A2	주거급여수급자	42,300	4,230	38,070	166,000	(+)	63,300	61,000		
								(-)	21,300	209,750	
44A 44B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7,200	6,720	60,480	263,000	(+)	100,200	98,000		
								(-)	34,200	331,750	
44A	44A1	고령자	63,840	6,384	57,456	250,000	(+)	94,840	95,000		
								(-)	32,840	314,580	
경기 광주역	22A	22A	주거급여수급자	26,700	2,670	24,030	103,000	(+)	39,700	38,000	
								(-)	13,700	130,080	
	22B	22B	고령자	33,820	3,382	30,438	131,000	(+)	49,820	51,000	
								(-)	17,820	164,330	
	36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5,600	5,560	50,040	215,000	(+)	82,600	80,000	
								(-)	28,600	271,250	
44A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6,000	6,600	59,400	255,000	(+)	99,000	90,000		
								(-)	33,000	323,750	
44B	44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5,600	6,560	59,040	254,000	(+)	97,600	94,000		
								(-)	33,600	320,660	
하남덕풍	18A	18A1	대학생	25,840	2,584	23,256	97,000	(+)	37,840	37,000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주택 구분	청약 구분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	13,840	122,000	
		18A2	고령자	28,880	2,888	25,992	109,000	(+)	42,880	39,000	
								(-)	14,880	138,160	
		18A3	주거급여수급자	22,800	2,280	20,520	86,000	(+)	33,800	31,000	
								(-)	11,800	108,910	
	26A	26A	청년	소득 有	38,160	3,816	34,344	144,000	(+)	57,160	49,000
	26B			소득 無	36,040	3,604	32,436	136,000	(-)	19,160	183,580
								(+)	54,040	46,000	
								(-)	18,040	173,500	
	26A	26A1	고령자	40,280	4,028	36,252	152,000	(+)	60,280	52,000	
								(-)	20,280	193,660	
	26A	26A2	주거급여수급자	31,800	3,180	28,620	120,000	(+)	46,800	45,000	
								(-)	16,800	151,250	
	36A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6,800	5,680	51,120	214,000	(+)	84,800	74,000
	36B									(-)	28,800
								(+)	28,800	272,330	
	36B	36B	고령자	53,960	5,396	48,564	203,000	(+)	79,960	73,000	
								(-)	27,960	257,160	
	44A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8,000	6,800	61,200	256,000	(+)	102,000	86,000
	44B									(-)	34,000
								(+)	34,000	326,830	
	44B	44B	고령자	64,600	6,460	58,140	243,000	(+)	96,600	83,000	
								(-)	32,600	309,660	

• **공급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동호배정은 전산추첨)합니다.
- 동일한 공급형(주택구분) 범위 내에서 일부 공급대상 주택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시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급대상 계층 예비당첨자에게 **시설의 변경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공급**(동호배정은 전산추첨 배정) 합니다.

※ 남는 주택의 공급대상별 공급 순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대학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

-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택은 금회 모집 대상자(예비자 포함)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거나 예비당첨자가 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 또는 예비당첨자 자격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자는 아래의 입주자격 변경 등으로 허용되는 계약이 아니면 청약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 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은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또는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 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대상 여부, 할증대상 여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대학생계층 및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은 불가)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입주 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 단지 내.외부환경,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및 청년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사람은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서류제출 대상자는**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를 각각 3배수 이내로 선정** 합니다. 다만 우선공급 대상자가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대상자 수만큼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가선정 하며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㉒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㉒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2,645,147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을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경기도), 성남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붙어 갖춘 사람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사람.
-----------------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다산지금A5	2-2. 청년
하남덕풍	2-3. 청년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④와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100%)	본인(80%)
세대원 있는 세대주	2인	4,379,809원 이하	3,503,847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501,518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4,981,074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5,550,683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6,075,266원 이하
그 외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소득만 기준	-	2,116,118원 이하

-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청년계층은 소득 유(有)·무(無)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됨.
 -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구분	다산지급A5	하남덕풍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경기도),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다산지급A5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하남덕풍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다산지급A5	2-4. 청년(벤처기업 인재우선 공급)
	2-5. 청년(자유창업인 우선공급)
	2-6. 청년(전용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2-7. 청년(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100%)	본인(80%)
세대원 있는 세대주	2인	4,379,809원 이하	3,503,847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501,518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4,981,074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5,550,683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6,075,266원 이하
그 외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소득만 기준	-	2,116,118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수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청년계층은 소득 유(有)·무(無)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됨.
 -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구분	다산지급A5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1) 벤처기업 핵심인재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붙어 갖춘 사람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1순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핵심인력으로 선정되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 벤처기업 해당여부는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에서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함
- ※ 핵심인재 해당여부는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확인서에 의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2) 자유창업인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붙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①-㉓ (창업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①-④ (예비 창업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입주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② 통계청이 발표(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대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 ㉓~㉗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㉘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 ㉓ 제조업(10~34) : 담배 및 사행성 장비 제조업 제외.
 - ㉔ 정보통신업(58~63) : 사행성 게임 및 영상제작업 제외.
 - ㉕ 연구개발업(70).
 - ㉖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㉗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지정 받은자.
- ③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전용사무공간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할 것

- ※ 임대차계약 대상인 공유오피스 내 전용사무공간의 임대료는 인근시세의 80%수준(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으로 제공 예정
- ※ 창업인의 사업 개시일과 ②-㉓~㉗의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 창업인은 모집공고일 이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모집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나 기타 정부부처(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사업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 인증 또는 지정 받은 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 ※ **예비창업인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창업(사업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명 내용이 위 자격요건 ②-㉓~㉗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자유창업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전용사무공간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 전용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붙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①-㉓ (창업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①-④ (예비 창업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입주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②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 및 인허가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내 허용되는 업종일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사행성 업종, 복권판매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 불가)
- ③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상가(1층 1개호, 32㎡)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할 것

- ※ 임대차계약 대상인 상가의 임대료는 인근시세의 80%수준(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으로 제공 예정
- ※ 창업인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 창업인은 모집공고일 이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명' 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 ※ **예비창업인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상가(1층 1개호, 32㎡)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창업(사업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명 내용이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전용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상가(1층 1개호, 32㎡)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4) 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①-㉓ (창업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①-㉔ (예비 창업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입주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② 통계청이 발표(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대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 정보통신업(58~63) : 사행성 게임 및 영상제작업 제외.
- ③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공유사무실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할 것

- ※ 임대차계약 대상인 공유오피스 내 공유사무실의 임대료는 인근시세의 80%수준(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으로 제공 예정
- ※ 창업인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 창업인은 모집공고일 이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명' 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 ※ **예비창업인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창업(사업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명 내용이 위 자격요건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공유사무실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다산지금A5	2-8.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경기광주역	2-9.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하남덕풍	2-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를 모두 갖춘 사람

- ①-㉓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㉔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을 것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일반(100%)	맞벌이 부부(120%)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맞벌이 부부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중복시 전부무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혼인기간 산정시, 동일인과의 혼인기간은 혼인관계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기간을 합산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다산지금A5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 또는 연접지역(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경기도),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가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 요건을 갖춘 자.

다산지금A5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경기광주역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자
하남덕풍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자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 제외)
- ※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자녀 출산(태아도 포함) 2년 이내인 신혼부부(예비신혼과 한부모가족도 포함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기준에 따라 배점

- ※ 출산기간의 확인은 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산정함.

• 배점(우선공급 2순위 적용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 등 신청자의 잘못된 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다산지금A5	2-11. 고령자
경기광주역	2-12. 고령자
하남덕풍	2-1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2,645,147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 주택건설지역(다산지금A5 : 남양주시 / 경기광주역 : 광주시 / 하남덕풍 : 하남시)에 거주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중, 고령자계층 해당서류 제출로 증빙.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천
일반공급	추천

- ※ 동일 공급순위자간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다산지금A5	2-14. 주거급여수급자
경기광주역	2-15. 주거급여수급자
하남덕풍	2-16.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경기광주역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다산지금A5, 하남덕풍	우선공급 해당사항 없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추첨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청약 접수	12.21.(월) 10:00 ~ 12.24.(목)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1.1.5.(화) 16:00 이후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	'21.1.12.(화)~'21.1.15.(금)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1부(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현장접수처에서도 접수[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
입주자격 조사	약3개월 소요	·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당첨자(예비자) 발표 (계약방법 안내)	'21.4.15.(목) 16:00 이후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가상계좌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의 고객센터/계약정보 조회에서 확인
	전자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도와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현장 계약 가능시간 :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은 임대주택 청약센터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방식의 변경시는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미성년자는 필요서류(계약안내 참조)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시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아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 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16-7840(평일 10:00~17:00 가능)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처 주택관리1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현장접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16-7840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 준비서류는 아래 “4.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흑린 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청약 절차

1단계
공고선택

2단계
주택단지
선택

3단계
신청유형
선택

4단계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5단계
서약서 작성

6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물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낮은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별 해당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별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비고
공급신청서	•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 ※ 현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분은 불임 신청서 추가제출	인터넷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불임 서식)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만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1통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불임 서식)	* 예비신혼부부 계층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흠 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불임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1통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우선공급(1순위)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는 서류제출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사본 필수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 외 신청자는 입주전까지 사본 제출 가능 	1통
<p>□ 기타 필수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인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서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국민연금공단 등

		<p>가입증명서 추가 제출</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p>	국민건강보험공단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p>·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p> <p>·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p>	<p>지방고용노동청</p> <p>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공단</p>
		<p>[예술인]</p> <p>·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p> <p>·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p>	<p>한국예술인 복지재단</p> <p>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공단</p>
	해당자만 제출	<p>[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p> <p>-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p> <p>[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p> <p>-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p> <p>[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p> <p>-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p> <p>[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p> <p>-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p>	<p>해당 직장</p> <p>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p> <p>해당 학교</p>
청년	벤처기업 핵심인재	<p>· 벤처기업확인서</p> <p>·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확인서</p>	벤처확인 공시 시스템(벤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인	자유창업인	<p>[창업인] : 사업자등록증명</p> <p>[예비창업인] : 행복주택 예비창업 확인서</p> <p>[사회적 기업]</p> <p>·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 개시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p>	<p>국세청 공사양식</p> <p>국세청 또는 해당기관</p> <p>고용노동부 또는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p>
	전용상가 창업인	<p>[창업인] : 사업자등록증명</p> <p>[예비창업인] : 행복주택 예비창업 확인서</p>	국세청 공사양식
	온라인 창업인	[창업인]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예비창업인] : 행복주택 예비창업 확인서	공사양식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급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 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며 혼인합산기간 확인을 위해서 제출필요)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사무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고령자	[우선공급신청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 7. 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 7. 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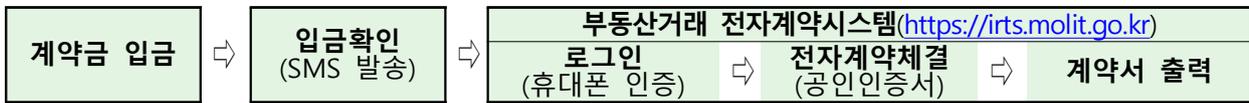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 당첨자 발표는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됩니다.
 - * 발표일정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게시됩니다.
-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계약을 도와드리며,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와 계약 상세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 과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계약체결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장계약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

- * 계약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16-7840](tel:031-216-7840)
[가능시간 : 10:00 ~ 17:00]
- * 현장계약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 서명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관련 본인인증 강화로 현장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 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전자계약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총자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392 1471 566">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및 대학생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주거급여수급자 계층</td> <td>20년</td> </tr> <tr> <td>고령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 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은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및 대학생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20년	고령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및 대학생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20년										
고령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0년의 경우 2,46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p>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96 264 1469 439">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이자 지급 없이 약 10일 전후 지급)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 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펌프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신 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단자함은 공급유형에 따라 거실/주방/현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비상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주거약자세대 방(침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아래에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신발장, 파우더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강마루,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에는 마감재(타일)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은 발코니 내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시스템 루버 설치로 인해 에어컨 가동시 반드시 루버를 열고 가동해야 합니다. (루버를 닫고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배관, 에어컨드레인배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거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규격 및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 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남양주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2개소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학원 및 등하원 차량 드랍오프 존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위치함 / 단지내 어린이집 차량 드랍오프 존은 지하주차장내에 위치함)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됩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507동 옥탑층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01동, 505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중계장치용 예비배관이 시공되며 추후 입주 시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지하2층(피트층)에 중계장치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피뢰침의 경우 측뢰피뢰침은 각 동 23층~29층 사이에 설치로 인하여 미관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차장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하여 인근동 입주자 및 주변 보행자는 빛 반사 및 미관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일반층 및 엘리베이터 홀 창 전체는 고정창임)

-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15인승/17인승(속도 120m/min)이 설치되며, 옥외 엘리베이터는 15인승(속도 60m/min)의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특성상 운행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및 북측 보행자 통로 경계부 일부는 고저차로 중력식 옹벽이 시공되며, 동측(완충녹지구간 경계부) 일부는 조경석쌓기가 조성됩니다.
- 단지울타리는 남측 및 북측 일부구간에 한하여 설치되며, 그 외 구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989대이며, 공동주택 1,965대(지상 508대, 지하 1,457대), 상가 24대(지상)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는 총 64대임)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자동차 출입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내부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급속(2대), 완속(8대)를 지하주차장 2곳으로 나누어서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1개층~2개층이고(501동, 502동, 503동, 504동, 505동은 지하주차장 1개층 / 506동, 507동은 지하주차장 2개층)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24대이며 지상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구분되어 설치됩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동의 인근 지상층에 상가 주차장이 설치되며, 지상주차장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 동, 세대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제연설비 가동시(화재발생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통행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바닥 레벨이 지하주차장 바닥보다 1.5m 하향되어 있으며, 전기실 입구 계단 하부실에 집수정이 설치됩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안방, 거실용 매립배관설치), 실외기실 전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1동 지하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502동에 인접하여 상가가 설치됩니다.
- 503동 1층 하부층에 주민공동나눔시설이 설치됩니다.
- 504동 1층 하부층에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됩니다
- 507동 지하에 인접하여 지하저수조 및 펌프기계실이 설치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일부층(8개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

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 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와 인접한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다산신도시 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 시기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부지 동측으로 폭 27미터(6차선) 도로와 대지경계선 사이에 약 폭 20미터의 완충녹지가 있으나 차량통행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부지 남동측 대지경계선 인접하여 A-3블럭(공동주택)이 위치합니다.(현재까지 미착공)
- 본 부지 북측으로는 30미터(6차선 이상)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건너편에 A-2블럭(공동주택)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 본 부지 남측으로는 폭 18미터(2차선) 도로와 도로 건너편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차량 통행 소음 및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부지 서측으로는 폭 24미터(4차선) 도로와 대지경계선 사이에 약 폭 30미터의 근린공원이 있으나 차량통행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 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완충녹지공간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위치한 상가(2개동)로 인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위치한 어린이집 및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시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

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3개층(지하1층~지상2층)으로 조성되며, 지상1층 및 지상2층은 하남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이 되며, 하남시에서 관리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상2층 일부를 사용합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동측면 지상1층)도 행복주택 주차장과 하남시 공영주차장을 겸용하므로, 이용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신 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단자함은 공급유형에 따라 거실/주방/현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비상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신발장, 파우더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강마루,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에는 마감재(타일)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은 발코니 내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시스템 루버 설치로 인해 에어컨 가동시 반드시 루버를 열고 가동해야 합니다. (루버를 닫고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배관, 에어컨드레인배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규격 및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재, 단지 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하남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행복주택주차장용 1개소, 하남시 공영주차장용 1개소로 분리되어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엘리베이터홀 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 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일반층 및 엘리베이터 홀 창 전체는 고정창임)
- 단지 서측 경계부는 외부와 고저차가 발생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79대이며, 행복주택 98대(지상 22대, 지하 76대), 상가 1대(지상), 하남시 공영주차장 80대(지상 80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는 총 6대임)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완속 2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상가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 전원은 한전측으로부터 공급규정에 따라 별도 저압 공급이 되지않으며, 아파트 전기실 변압기에서 공급됩니다.
- 전기실 위치가 지하2층에 시공되며, 전기실 출입문 앞쪽에 집수정이 설치됩니다.
-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부분은 시설관리주체가 달라서,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메인 계량기를 전기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간선은 아파트용 EPS실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 및 상가 메인 판넬로 공급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3개층(지하1층~지상2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상2층 일부구간을 사용하며, 하남시 공영주차장은 지상1층 및 지상2층을 사용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차 차량 중 18대는 하남시 공영주차장(지상2층)에 주차하게 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1대이며 지상1층 주차장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본 단지 주차장은 행복주택 주차장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이 동일 건물내에 공존하므로, 입주자의 주차장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제연설비 가동시(화재발생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통행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등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안방, 거실용 매립배관설치), 실외기실 전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일부층(8개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 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와 인접한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구내 중계 통신안테나는 지상2층 하남교회방향 벽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 여건에 따라 향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내부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에 입주민 휴게공간 및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가 조성되어 소음 발생 및 경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층부계약시 유의바랍니다.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본 부지 동측으로 왕복 4차선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차량출입구(동측)는 하남시 공영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단지 진출입시 또는 주차장 사용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내에 위치한 하남시 공영주차장(지상1층,2층)은 하남시에서 별도로 관리 예정이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자 출입으로 인해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위치한 상가로 인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 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세대분전반, 통합단자함이 거실 또는 침실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보일러 및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에 설치되는 세대분전반 및 콘센트 등의 위치는 세대간 방음을 위해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 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광주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공동현관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경비실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있으며, 복도 이용자로 인한 소음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44대이며, 지하 435대(일반 229대, 확장 188대, 장애인 10대, 대형 8대), 지상 9대(근생4대, 지역 편의시설 5대)로 계획되어 있고, 지역편의시설 주차에는 카셰어링 2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구의 유효높이는 2.4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4대이며 지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근생시설동의 지상층이 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지상주차장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등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은 동절기 영하의 온도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 배관 동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은 경량1등급, 중량 3등급으로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시험 성적서의 완충재 자재 기준이며, 사용검사 후 바닥 충격음에 대한 시험결과 성능등급은 각 세대의 측정위치와 측정시간, 주변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10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내시경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복도 천정에는 소화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 소화 배관이 지나가는 구간은 커버 또는 천정이 설치될수 있으며, 커버 또는 천정으로 인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2, 36Type 전열교환기가 거실 천정에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광주역세권 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및 동측에는 폭 13m 도로 서측에는 공공공지, 남측에는 폭 26m 경충대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공원 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관계기관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 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단지 남측에 방음벽 및 반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완충녹지와 높이 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옹벽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

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 높이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조경 또는 웬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시공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구 점용료 발생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부지 인근 횡단보도 부근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에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웬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과 인접하여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 등이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본 단지과 인접하여 지상 노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시설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서측에 차고지 계획이 있고, 경안장레식장 및 일부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의 현황 등은 관계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인근 대중교통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위치한 상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됩니다.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시 **서면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 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아래의 신청(제공) 가능한 편의증진시설외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 신청(제공) 가능한 편의증진시설 :

구분	설치항목	시설내용	신청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욕실	좌식 샤워시설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1개, -자형1개)	지체·뇌병변장애인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1개) 설치	

10.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택성능등급 성능 수준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다산지급A5	경기광주역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2)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다산지급A5	경기광주역
1. 내구성	★★	★
2. 가변성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3)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다산지급A5	경기광주역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5. 에너지 성능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종물질의 사용금지	-	★
10. 환경성선언 제출(EPD)의 사용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16. 빗물관리	-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3)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범주	성능등급	
	다산지급A5	경기광주역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22. 생태면적률	★★	★★
23. 비오톱 조성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사용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다산지급A5	경기광주역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14. 방법안전 콘텐츠	★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다산지급A5	경기광주역
1. 감지 및 경보설비	★	★
2. 재연설비	★★	★
3. 내화성능	★	★
4. 수평피난거리	★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6. 피난설비	★★	★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정보 제공 및 건설기준

- 다산지급A5, 하남덕풍 : 해당없음(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가 없으며,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구조임)
- 경기광주역 : 세대 침실 및 거실, 발코니, 실외기실등에 위치한 세대 간 경계벽에는 경량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11. 위치안내

구분	위 치
<p>현장 접수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20.12.3.~마감일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제외] · 상담전화 : 031)216-7840 <p>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p> <p>※ 주의: 자격심사서류 우편제출자는 아래주소로 발송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 관리1부(행복주택 공급담당자)</p>	 <p>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구주소 : 팔달구 인계동 1125-2번지 / Tel 031) 216-7840)</p> <p>※ 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출구에서 도보 1분거리 ※ 자가용 이용시 건물 내 지하주차 가능(방문 후 주차확인 필요)</p>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 031-216-7840
------	----------------

2020. 12. 3.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경기주택도시공사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여비신희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

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3.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해당 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입주 자격별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신청인 : (인)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별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input type="checkbox"/>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input type="checkbox"/>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input type="checkbox"/>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 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		
		-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담당자 확인사항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존재 확인해야함.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붙임]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각 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필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 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 (현장신청용)

1.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내용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비고
			<input type="checkbox"/> 우선공급 <input type="checkbox"/> 일반공급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 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 (현장계약용)

1. 계약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계약주택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동 호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통계청이 발표(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C	제조업(10-34)	10	식품품 제조업	101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2	가금류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물 훈제, 조미 및 유사 조제 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감채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외 채소 절삭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냉동제품 및 식용 병마 류 제조업	1050	냉동제품 및 식용 병마 류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냉동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병마류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 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쿠키아제품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	도시락 및 식용 조미 식품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용가공처리조식품 제조업
						1079	기타 식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군살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충용 약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사 료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사 료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0802	단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발효주 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 복 제외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직업

									기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변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 외기타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름용 원지 제조업
								17123	코프트지 및 상지용 판지 제조업
								17124	정층 합성 및 특수 코팅지 종이 제조업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 제품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722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 외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르크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1	코르크 및 연탄제조업	1910	코르크 및 연탄제조업	19101	코르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업	19210	원유 정제업	
						1922	석유 정제품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고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 정제품 재처리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추출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학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화학 물질 제조업
					2013	무기 안료 염료 유도체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도체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202	합성추출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합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3	비료 영양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31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	20311	질소 화학물 질소·인산 및 칼륨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	살균·살충제 및 영양제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영양용 액체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화학용 물감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2	차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살내기용제 제조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김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접착제 제조업	
							20494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인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품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품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학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방약품 제조업	21220	한방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약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약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약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외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실내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상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상형제품 제조업	22251	플라스틱렌 발포 상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상형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제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장식 도포 및 기타 표면 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 외 기타 유제품 제조업	
			232	내화·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장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3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집토 벽돌 블록 및 유사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 레몬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바하 모र्ट르 제조업
								23322	레몬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23992	연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인편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인편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철강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제철 및 제강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판 제조업	24131	주철판 제조업
								24132	강판 제조업
								24133	강판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9	기타 1차철강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철강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산철 주물 주조업
								24312	강 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2	동 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도구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발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산업용 난방보일러 금속 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가스 용기 제조업
						2513	해빙용기 및 증발보일러 제조업	25130	해빙용기 및 증발보일러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 이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류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형성 공구 제조업
						2594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5	파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21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	인쇄회로 판 및 전자부품 실장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 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 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 커패시터 제조업
								26294	전자용 필, 변상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가역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가역 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27191	차폐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의료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인형 및 인형원즈 제조업
									27194	의료용 기구 제조업
									27199	그 외기타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어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름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 차등정 제어장치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치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	전자 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 램프용 인장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1	전회로 기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2	전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회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회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회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자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 외기타전자 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탱크,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탱크,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 용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치 제조업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3132	항공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용 부품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원동기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 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 제조업		33201	간반 악기 제조업
									33202	전자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양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양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용 장비 제조업
									33303	누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양구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캐릭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
						3393	가발, 장신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33932	전사용 모형 제조업
									33933	표구 차량업
						3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2	라이트,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3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	일반기계류 수리업		34011	건설·광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2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민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2	신문, 잡지 및 장기간 행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장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장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우선 유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10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11	공영 우편업	6110	공영 우편업	61100	공영 우편업	
			612	전기 통신업	6121	유선 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1291	통신 재판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련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련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련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